

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무사고 ·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.
[<개정 2018. 12. 31., 2024. 7. 10.>](#)

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.
[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16., 2017. 1. 6., 2019. 6. 28.>](#)

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 · 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.
[<신설 2020. 10. 8.>](#)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목개정 2020. 10. 8.]

제54조 삭제 [<2003. 2. 27.>](#)

제55조 삭제 [<2003. 2. 27.>](#)

제56조 삭제 [<2003. 2. 27.>](#)

제57조(검사공무원증 등)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.

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 · 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58조(수수료)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, 시 · 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(영 제14조에 따라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)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
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30.>

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.
<신설 2011. 12. 31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59조 삭제 [<2010. 12. 29.>](#)

제60조 삭제 [<2003. 2. 27.>](#)

제61조 삭제 [<2022. 9. 30.>](#)

제62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<개정 2023. 7. 10.>

1.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
2. 삭제
<2023. 7. 10.>
3.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

[전문개정 2016. 12. 30.]

제9장 벌칙 [<신설 2024. 12. 18.>](#)